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 - 1342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천사(1040) 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인천광역시 천사(1040) 지원금
2. 지급대상: 1세~7세 아동('23. 1. 1. 출생아부터 지급) \* 매년 신청  

*'24년 신청 대상 : 인천광역시에서 출생한 2023년생 아동만 가능
---

  - \* 전입 아동의 경우, '25년부터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3. 지급금액: 출생아당 840만원(7년간, 연 120만원)
4. 자격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사람
  -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 (전입자) 아동의 생일 도래 전 인천시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 연도 신청일에 그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5. 신 청 자: 아동의 부 또는 모
  - \* (예외) 부모 외 보호자 신청
    -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후견인 등 보호자
    - 아동이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부와 모가 모두 장기 부재(장기 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 등 보호자(아동이 부모 외 보호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6. 신청시기: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24. 1. 1. 대상자부터 소급 적용('23. 1. 1. ~ 6. 9. 출생 아동)

: 최초 사업 개시('24. 6. 10.) 후 60일 이내 신청('24. 8. 8.까지 신청)

7. 지급방식: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천사지원금) 지급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기본 제한 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 사용 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지 급 일: 신청 익월 23일(예정)

8. 신청방법

○ 신청개시: **2024. 6. 10.(월) 09시부터**

○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아동의 부 또는 모)

-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 보조금24 (내국인만 신청 가능)

\* 정부24 접속 →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 '천사지원금' 검색·신청 → 신청서 작성, 접수

※ 방문 신청 : 부 또는 모 이외의 보호자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인천e음 앱 미가입자는 사전에 본인 명의 휴대폰 인천e음 앱 가입 및 카드발급 필요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는 지급 시기 지연

○ 접 수 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착오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관련 서식

## □ 신청서

### 인천시 천사지원금 지급 신청서

대상자 (아동)  쌍둥이의 경우 √ 체크, 별지 작성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 소 지				연락처		
	출 생 신 고 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생일 (인천시 전입일)	20 . . .	(20 .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전입일		
	주민등록 주 소 지				연락처		
천사지원금	신청금액(연)	<input type="checkbox"/> 120만원 <input type="checkbox"/> 대상인원 :    명    * 대상 인원은 쌍둥이일 경우만 기재					
	전입자 신청금액(해당 월)	만원(    개월) * 아동의 생일 이전에 거주 요건(인천광역시 1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해당 월수에 따라 산정한 천사지원금 추가 지급(월 10만원)					
상기 서비스 제공 사항에 대해 인천시 천사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h3>○○ 군수·구청장 귀하</h3>							
신청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2. 주민등록등본 1부.(등본으로 개인별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3.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2호,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기타 자격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생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90일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하며, 허위 신청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4.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환수함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별지

대상자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 소 지		연락처	
	출 생 신 고 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자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 소 지		연락처	
	출 생 신 고 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자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 소 지		연락처	
	출 생 신 고 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자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 소 지		연락처	
	출 생 신 고 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자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 소 지		연락처	
	출 생 신 고 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위임장

**천사지원금 지급신청 위임장**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신청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위 위임자는 천사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관련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3(천사지원금)** ① 시장은 아동의 출생·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1세가 되는 아동에 대하여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20만원 이내의 천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사지원금은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급한다.

1.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2.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도 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당해 연도 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요건을 갖춘 아동으로서 당해 연도 생일 이전에 계속하여 지급 요건을 갖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갖춘 해당 월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연도 천사지원금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당해 연도 생일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되,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수에 산입하고 15일 미만은 버린다.

④ 천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천사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 또는 모
2.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부와 모가 모두 장기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

⑤ 시장은 천사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을 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지급결정일 당시 제2항 각 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사지원금의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